

제288회 임시회
2010.3.23(화)

심 사 보 고 서

-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0. 3. 23(화)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민경환 의원 외 6인

나.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 2010년 3월 3일
- 회부일자 : 2010년 3월 4일

다. 상정일자 : 제28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2010.3.1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산업경제위원회 박영웅 의원)

가. 제안이유

- 운용중인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명시된 사항을 추가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현실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정비함(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13조)
- 상위법령에 명시한 사항의 추가(안 제6조)

3. 검토보고 요지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 민병완)

-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시행된 조문 중 일부분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함.
- 다만, 조례개정에 따라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은 없는지 관련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경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76
----------	-----

발의연월일 : 2010년 3월 3일

발 의 자 : 민경환 · 이영복 · 권광택 · 박영웅 ·
심홍섭 · 송은섭 · 이범윤 (7인)

1. 제안 이유

- 운용중인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
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명시된 사항을 추가하여 기금을 효율적
으로 관리·운용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가. 현실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정비함(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5
조, 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13조)
- 나. 상위법령에 명시한 사항의 추가(안 제6조)

3. 조례안 : 불 임

4. 관계법령 발췌 : 불 임

5. 예산조치 : 자체 세부계획수립시 재원확보

6. 관련부서 협의 : 농업기술원 기술지원부 지원기획과와 협의

7. 입법예고사항 :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
22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함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충청북도 4-H 연합회의 기금운용은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충북4H본부에서 한다.

제4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2조에서 정한 단체회원의 회비 및 후원금
3. 전년도 운용기금 이월금
4. 기타 지원금

제5조제3항제2호 중 “충청북도의회 추천 2명 이내”를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추천 2명 이내”로 한다.

제6조제3호를 제4호로 하되 같은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타 기금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3년마다 1회이상 실시하는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인 경우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적립기금 증식을 위하여 당해년도 적립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금의 10% 이상을 적립기금으로 재적립하여야 한다.

제12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2조에서 정한 단체별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제13조제2항 중 “기금운용관은 기술지원부장으로 하고”를 “기금운용관은 농업기술원장으로 하고”로 한다.

제1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운용기금 관리는 각 단체별 회장 책임하에 자체 기금관리 규정을 제정하고, 관련 대장과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단, 충청북도 4-H 연합회는 충북4H본부에서 한다.

제13조제4항은 이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기금의 구분 및 존속기한) ①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제 2조에서 정한 단체 별로 별도계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u>(단서 신설)</u></p>	<p>제3조(기금의 구분 및 존속기한) ① ----- ----- ----- ----- . <u>다만, 충청북도 4-H연합회의 기금운용은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충북4H본부에서 한다.</u></p>
<p>제4조(기금의 조성) ① (생략) ② 운용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생략) 2. 기타 지원금 <u>(신설)</u> 3. 제2조에서 정한 단체회원의 회비 및 후원금</p>	<p>제4조(기금의 조성) ①(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u>2. 제2조에서 정한 단체회원의 회비 및 후원금</u> <u>3. 전년도 운용기금 이월금</u> <u>4. 기타 지원금</u></p>
<p>제5조(위원회 구성) ① ~ ② (생략)</p>	<p>제5조(위원회 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1.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원의 농업기술원장, 기술지원부장, 지원기획과장, 충청북도 농정국의 농업정책과장, 농산지원과장</p> <p>2. 위촉직 위원은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로 위원장 추천 6명 이내, 농업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 충청북도 농정국장 추천 2명 이내, 충청북도의회 추천 2명 이내</p> <p>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조성과 운영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 2. (생략)</p>	<p>③ ----- ----- ----- -----.</p> <p>1. ----- ----- ----- -----</p> <p>2. ----- ----- ----- -----,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추천 2명 이내</p> <p>제6조(위원회의 기능) ----- ----- -----.</p> <p>1. ~ 2.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신설)</p> <p>3. 기타 기금운영에 따른 주요 사업에 관한 사항</p> <p>제8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인 경우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단체별 회장의 경우는 그 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p> <p>제10조(기금의 구분관리) ①(생략) ② 운용기금은 당해년도 적립기금의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되 기금증식을 위하여 매년 이자의 10% 이상을 적립기금으로 재적립하여야 한다.</p>	<p>3. 3년마다 1회이상 실시하는 기금 운용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p> <p>4. 기타 기금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제8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인 경우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p> <p>제10조(기금의 구분관리) ①(현행과 같음) ② 적립기금 증식을 위하여 당해년도 적립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금의 10% 이상을 적립기금으로 재적립하여야 한다.</p>

현행	개정안
<p>제12조(운용기금의 사용) 운용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목적에 사용한다.</p> <p>1. ~ 6. (생략)</p> <p>(신설)</p> <p>7. (생략)</p>	<p>제12조(운용기금의 사용) ----- ----- -----.</p> <p>1. ~ 6. (현행과 같음)</p> <p>7. 제2조에서 정한 단체별 인력 운영비와 기본경비</p> <p>8. (현행 제7호와 같음)</p>
<p>제13조(회계관리) ① (생략)</p> <p>② <u>기금운용관은 기술지원부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지원기획과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u></p> <p>③ <u>단체별 운용기금관리는 각 단체별 회장책임하에 자체 기금관리규정을 제정 관리한다.</u></p> <p>④ <u>단체별회장은 운용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u></p>	<p>제13조(회계관리) ① (현행과 같음)</p> <p>② <u>기금운용관은 농업기술원장으로 하고, -----</u> -----.</p> <p>③ <u>운용기금 관리는 각 단체별 회장 책임하에 자체 기금관리규정을 제정하고, 관련 대장과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u> <u>단, 충청북도 4-H 연합회는 충북4H본부에서 한다.</u></p> <p>(삭제)</p>

관 계 법 령

□ 농촌진흥법

제2조(사업의 정의) ①이 법에서 "시험연구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농업과학기술(축산업, 가축위생, 잠업, 버섯의 육종·재배, 농·축산물의 저장·이용 및 가공과 농기계·농약·비료등 농자재의 개량에 관한 기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개발을 위한 시험연구
2. 농업생물산업을 위한 첨단기술개발 및 농업환경보전에 관한 시험연구
3. 주요우량작물·채소종자·누에씨, 뽕나무묘목, 화훼종묘, 우량과수의 묘목, 유용미생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물과 가축전염병예방약의 개발 및 생산
4. 농기계·농약·비료등 농자재의 표준규격의 설정 및 품질관리
5. 농업경영의 적정규모화·능률화 및 협업화와 농업과 관련된 법인등 농업생산조직체의 경영개선에 관한 조사·연구
6. 농촌생활 및 농촌생활환경의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②이 법에서 "농촌지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생활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인 조직의 육성
2. 농촌청소년 및 후계농업경영인등 농업후계인력의 육성
3. 농·축산물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우량종자 및

종축의 보급

4. 제1항의 시험연구사업에서 개발된 기술의 보급
5. 지역농업의 개발과 농업인의 현장애로기술의 개발 및 보급
6. 농작물병해충의 과학적인 예찰, 방제정보의 확산 및 기상재해에 대비한 기술지도
7. 농작물의 품질 및 품위향상을 위한 지도
8. 가축질병예방을 위한 방역기술지도

③이 법에서 "교육훈련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시험연구사업·농촌지도사업 및 교육훈련사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교육훈련
2. 농업관련 산업계·학계·관계 및 연구기관의 협동(이하 "농업산·학협동"이라 한다)에 의한 농과계 학교의 교원 및 학생에 대한 영농기술교육훈련
3. 농업인·농촌청소년·농촌여성 및 이와 관련된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교육훈련
4. 농업인의 부업훈련 및 취업알선
5. 전업농업인 및 후계농업경영인등 전문농업인력의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4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용성과의 분석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있어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석결과를 확인·점검하여 기금운용의 성과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기금운용의 성

과향상을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확인·점검결과와 권고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운용성과 분석결과를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8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의 성과는 기금사업의 성과 및 기금자산의 운용성과 등을 분석하되, 구체적인 성과분석의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되, 기금별로 3년마다 1회 이상 성과분석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